

12100 준 공

1 일반사항

1.1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 (세대전수검사)

- 가. 주공은 준공예정일 45일을 전후하여 계약상 준공일에 준공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과 규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세대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나. 수급인은 공사의 준공판단검사자에게 "10131 공무행정서류 1.8.2 사급자재관련서류마."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세대전수검사)결과 기준과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세대전수검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라. 준공판단 검사 및 사전준공검사(세대전수검사)지적사항은 준공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2.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10131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2.2 준공검사 내용

주공이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 가.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 나.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 다.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 라.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 마.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 바.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 사. 인·허가 완료상태
- 아.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 자.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 차.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 가. 수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 데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보유하여야 한다.
- 나.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다.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가. 수급인은 주공직원 및 관리소담당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 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교육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절의 시방에 따른다.
다. 교육장소 및 일시는 주공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준공서류

1.5.1 종류 및 내용

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나. "10130 제출물 1.4 시공 상세도면"
다. "10130 제출물 1.7.1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또는 공사사진 CD(다만, CD는 공종, 위치, 촬영일시, 공사내용 등 사진의 내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라. "10130 제출물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마.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바. 신기술·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사. 신기술 사후평가서
아.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 기록부 등)에 한한다.
자.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차. 유지관리 지침
1)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설비기기에 한한다.
2)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설비기기 목록
- 설비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명, 주소, 전화번호
-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 설비기기 보증서
카. 초기점검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에 한함)

1.5.2 제출부수 및 시기

"10131 공무행정서류 1.5.2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6 준공도서 사본

1.6.1 종 류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시한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종합보고서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CD-ROM으로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주공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나.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안전점검종합보고서 포함)등

1.6.2 제출부수

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등 1종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3세트(주공 2세트, 시설안전기술공단1세트)

나. 기타 : 2세트(주공 2세트)

2. 자 재

(없음)

3. 시 공

3.1 준공 청소

3.1.1 청 소

가. 준공청소계획서

수급인은 준공청소 투입인원, 세대 출입통제방법 및 부위별·동별 청소 일정이 포함된 준공청소 계획서를 준공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기

- 1) 저층 : 현장에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준공15일전부터 실시
- 2) 고층 : 현장내 자재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준공25일전부터 실시

다. 방법

- 1) 입주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 4) 주방가구 및 설비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한다.
- 5)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 6)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 7)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 8) 지붕, 샤프트, 트렌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 9) 지붕, 트렌치, 훔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 10)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 11)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 12)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라.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청소 후 출입통제

- 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나.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 토록 하며,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비치하여 출입자가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 다.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 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하여야 한다.